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 공사를 마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코니의 설치·유지 기준에 발코니의 강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시설 등 영업장 내부구조의 변경 없이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가 다시 설치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3. ~ 1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행정안전부령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나.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의 설치·유지 기준:
2024년 1월 1일

별표 2 제2호다목2)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 등”이라 한다)	가. 공통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등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구조 가)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따른 방풍구조는 그렇지 않다. 나)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4) 문 가)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	--

할 것 나)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다)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3)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2개 이상의 층에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등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3) 비상구등의 문의 재질은 가목4)나)의 기준을 따를 것
--

-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의 기준
-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m²)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등의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장 구획 등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인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해당되는 경우 다. 영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서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면적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된 경우
-------------	---

별표 2 비고 제1호 본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별지 제9호서식 중 재발급 신청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내부구조·실내장식물이 변경된”을 “내부구조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제2호 중 “바뀐”을 “바뀌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된”으로 한다.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화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 비상구 폐쇄·훼손·주변 물건저치 등 장애		

여부 - 구조변형, 금속표면 부식·균열, 용접부·접합부 손상 등 확인(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펫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⑬ 방염 소파·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5조의2, 별표 2 제2호다목1),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의 설치·유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



1. 제작: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
가. 바탕: 금색(테두리: 검정색/적색)
나. 바탕: 은색(테두리: 검정색/청색)
2. 규격: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3. 재질: 스테인레스(금색 또는 은색)
4.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고도B 21/85밀리터(검정색)
나. 조항: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관명: KoPubWorld돋움체 10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5.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교육·정기점검: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구조안전 확인서

신고인	성명(법인명)			영업장 상호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발코니 등 일반현황	발코니 등의 자재 종류			발코니 구조			기타
	외벽 (설치벽면)	바닥	난간	가로(cm)	세로(cm)	면적(㎡)	난간높이 (cm)

검토결과	☐ 종합의견: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발코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활하중 기준(5KN/㎡ 이상)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 기타의견: 년 월 일 검토자: 건축구조기술사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귀하

유의사항

신고인(영업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에 본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